

범주: 학생 발행일: 2010년 9월 22일 번호: **A-190**

주제: 복수 학교의 학교 운영 및 학교 건물 관리 절차의 현저한 변경 페이지: 1 / 2

변경 내용 요약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자 교육감 규정 A-190을 대체합니다.

변경 사항:

-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변경 안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학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 I.A).
- 모든 과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칭하기 위한 "할당된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I.C).
- "할당된 교육위원회("CEC")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 I.D).
- "과밀 지역위원회"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1, § I.E).
- 교육감 규정 A-660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이 규정에 사용된 "학부모"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p. 1, § I.F).
-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라는 용어에 제75학군 조직에 대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현재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영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배치에 대한 변화나 현재 교육청(DOE)이 운영하지 않는 새로운 장소에서 개교하는 신규 학교 또는 기타 시설의 공동 배치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p. 1, § I.G).
- DOE 가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합니다(p. 1, § I.H)
- 교육적 영향 선언문("EIS") 및 건물 사용 계획 작성에 사용하기 위한 견본 지침을 명시한 새로운 부록을 추가합니다(p. 2, § II.A.1 및 부록 번호 1; pp. 2-3 § II.A.2(a)(ii) 및 부록 번호2).
- 하나 이상의 비차터스쿨과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의 공동 배치와 관련하여 EIS 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명시한 새로운 섹션을 추가합니다(pp. 2-3, § II.A.2).
- 할당된 학교 또는 과밀 학교, 학부모, CEC, 학교 리더십팀, 기타 해당 단체에게 EIS 사본을 접수 및 배포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합니다. (pp. 3-4, § II.A.3)
-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안에 대한 일정 결정, 의제 설정, 공동 공청회의 안내문 제공 등의 절차를 수립합니다. (pp. 4-5, § II.B).
- 교육감이 EIS 를 개정한 후 공동 공청회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p. 5, §II.B.5).
- 교육정책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가 효력을 개시하는 시점을 설정합니다(p. 6, § II.C.5).
- 두 개 이상의 학교들이 공동 배치된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건물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러한 건물위원회를 위한 최소 회의 일정 및 절차를 수립합니다(pp. 6-7, § III.A).
-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이 하나 이상의 비차터스쿨과 공동 배치된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 공동 공간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의 DOE 학부모와 교사 대표를 해당 학교의 SLT 구성원이 선출하도록 지정합니다(p. 7, § III.B.1).

범주: 학생

발행일: 2010년 9월 22일

번호: **A-190**

주제: 복수 학교의 학교 운영 및 학교 건물 관리 절차의 현저한 변경

페이지: 2 / 2

-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에서 요구하듯이 교육감 또는 그 지명자는 자금 출처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 건물 내의 차터스쿨의 공동 배치를 위한 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안을 서면으로 승인해야 하며 차터스쿨이 그러한 승인을 얻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7-8, § III.B.2).
- 규정 전체에서 “D75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D75 학교 조직”으로 수정합니다.
- 조직의 대표가 누구이며 공동 공청회 참여에 대한 제안서 및/또는 초대장을 수령할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합니다.
- 교육감이 승인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매칭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는 그러한 증액이나 업그레이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공동 배치 비차터 공립학교에 대해 차터스쿨의 지출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p. 7, § III.B.2).
- 이러한 규정에 관한 질문을 담당할 연락 담당실의 이름을 업데이트합니다.

개요

2009년 뉴욕시 교육법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변경을 할 때 모든 제안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나 일반인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뉴욕시교육청(이하 교육정책 위원회(PEP)라 칭함)이 교육감의 학교 폐교나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승인하도록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기존의 공립학교 건물에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추가 절차를 요구하는 뉴욕주 차터스쿨법(New York State Charter School Act) 1998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 이 개정된 규정은 이 법의 각 개정 사항을 구현합니다.

I. 용어 정의

- A.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제안의 경우 "할당된 학군"이란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위치하는 학군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학년에 관한 제안의 경, 이 용어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위치하는 지리적 경계 내의 학군을 의미합니다.
- B. "할당된 학교" 및 "과밀 학교"라는 용어는 이 제안에서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개별 교육 기관과 제안의 결과 새롭게 공동 배치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학교의 학년 구성을 확장하는 제안의 경우 이 용어는 확장할 학교와 공동 배치되는 학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C. "할당된 학생"과 "할당된 학부모"라는 말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를 위한 제안 당시 과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및 그 학부모를 의미합니다.
- D. "과밀 지역 교육위원회(CEC)" 또는 "과밀 CEC 또는 위원회"라는 말은 할당된 학군을 대표하는 CEC를 의미합니다.
- E. "과밀 지역위원회"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제안의 경우 할당된 학교가 위치하는 학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속하는 지역위원회를 말합니다. 고등학교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 이 용어에는 할당된 학교가 위치하는 지리적 경계 내의 학군에 위치하는 지역위원회가 포함됩니다.
- F. 교육감 규정 A-660의 정의에 따라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관계 또는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학부모의 정의에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 의붓부모, 법적 보호자, 양부모, 학생과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G.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이란 현재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서의 학교 또는 제75학군 학교 조직의 단계적 폐교, 학년 재구성, 이전, 공동 배치 등을 의미합니다.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에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의 변경, 학군 배정 경계의 변경 또는 현재 학교나 기타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시설에 영재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의 배치가 포함되지 않으며 새로운 장소에서 개교하는 학교 또는 현재 DOE가 운영하지 않는 기타 시설의 공동 배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H.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는 건물의 가치, 외관 또는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건물의 영구적인 추가 또는 변형이나 새로운 용도에 맞도록 건물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추가 또는 변형은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되거나 기존 건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제거할 경우 건물이나 물체 자체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전술한 사항 이외에도 도색, 바닥재 교체, 전기 및 컴퓨터 네트워크 배선 설치, 창문용 에어컨 추가 등과 같은 추가나 변형의 비한정적 목록은 시설 업그레이드에 해당합니다. 교육감은 제안된 프로젝트가 시설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II. 폐교 및 학교 운영 변경을 위한 교육감 제안의 일반인 검토 및 의견 제출 절차

A. 교육적 영향 선언문

1. 교육감이 폐교 또는 학교 운영에 대한 현저한 변경을 제안할 경우(예: 단계별 폐교, 학년 재구성, 이전, 공동 배치) 교육감은 교육적 영향 선언문("EIS")을 준비합니다¹. 그러한 EIS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할당된 학교의 현재 및 향후 학생 등록
 - b. 학교 건물에 대한 향후 수요
 - c. 폐교 또는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세분화된 사항
 - d. 폐교 또는 운영의 현저한 변경으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및 절감액
 - e. 폐교의 잠정적 처분 가능성
 - f. 제안이 할당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g. 학교 건물을 기타 교육 프로그램 또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제안 또는 잠정적 사용의 요약
 - h. 폐교 또는 직원의 수요, 교육 비용, 행정, 교통, 기타 지원 서비스 등의 활용에 대한 변경이 미치는 영향
 - i. 학교 건물의 종류, 연령, 물리적 상태, 보수, 에너지 비용, 학교 건물의 최근 또는 예정된 개조, 건물의 특수 기능
 - j. 폐교 또는 운영을 변경한 후 학생의 편의를 도모하는 할당된 학군 학교의 능력,
 - k. 해당 학교가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 달성, 등록 평가 중인 학교 및/또는 차별화된 책임 상태(개선 필요, 시정 조치, 구조조정) 등으로 확인되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학교의 학습 성과와 관련된 정보.
2. 기존 공립학교 건물에 위치 및/또는 공동 배치된 차터스쿨에 대한 EIS.
 - a. 기존 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려는 제안을 위해서 EIS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공립학교 건물을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는 장소로 선정된 이유.
 - ii. 건물 활용 계획.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건물 활용 계획에 대해 제안된 지침은 부록 번호 2의 본 규정에 첨부되어 있음):

¹ EIS를 위해 제안된 지침은 부록 번호 ~의 규정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1. 각각의 제안은 고유하므로 EIS에는 해당 제안 사항과 관련된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a) 차터스쿨과 비차터스쿨 사이의 교실 및 행정 공간의 실제 할당 및 공유. 할당을 할 때 DOE의 교육 범위("범위")에 따라 건물의 각 학교에 할당되는 교실의 수와 종류를 지정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이 범위에 따라 할당되지 않는 교실의 수와 종류도 지정합니다. 이 범위에 따라 할당되지 않은 공간은 공동 배치 학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할당됩니다. 공평한 할당을 결정할 때 DOE는 공동 배치 학교의 상대적 등록 인원, 공동 배치 학교의 교육 및 체계적 요구사항, 건물 내 잉여 공간의 물리적 위치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b) 차터스쿨과 비차터스쿨이 공동 자원 및 공간을 협력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 여기에는 카페테리아,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공간이 포함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차터스쿨 학생과 마찬가지로 비차터스쿨 학생도 유사한 방법과 시간에 그러한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함.
 - (c) 제안된 할당과 이 하위절 (가) 및 (나)에 명시된 일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제안된 할당 및 공동 사용으로 공립학교 건물의 공평하고 동등한 사용이 가능할지를 판단.
 - (d) 건물 안전 및 보안
 - (e) 공동 배치 학교가 사용할 의사교환 전략
 - (f) 본 규정의 제 III.B.1절에 따른 공동 공간위원회 설립을 포함한 공동 배치 학교가 사용할 협력적인 의사결정 전략.
- iii. 건물 사용 계획의 개정을 위해서는 뉴욕 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2590-g 하위절 7에 따른 요건에 따라 PEP 승인이 필요합니다.
- (a)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범위에 따라 공동 배치 학교가 할당된 기본 교실 수보다 적은 교실을 할당 받은 건물 활용 계획의 변경 안은 "개정"이 됩니다. 캠퍼스 정책 비망록(Campus Policy Memo)에 명시된 해결 절차에 따른 경우에도 관련 건물위원회가 범위에 따라 할당된 것 이외의 공간과 관련된 제안된 변형 또는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물 활용 계획의 그러한 변경은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3.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을 변경하는 학년도의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전에 교육감은 DOE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EIS를 게시하며 과밀 학교 교무실에 EIS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PEP, 과밀 지역교육 위원회(CEC), 과밀 지역 위원회, 지역 학군장, 과밀 학교의 리더십팀(SLT),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CELL"),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CCSE") 등에 EIS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관련 제안의 경우 교육감은 EIS 사본을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CHS")에 제출하며 제 75학군("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에 대한 제안의 경우 교육감은 EIS 사본을 D75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고등학교와 관련된 제안서의 경우, 교육감은 모든 지역사회 위원회와 고등학교가 위치하는 보로의 CEC에게 EIS 사본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올바른 접수는 EIS 사본을 PEP 회장, 과밀 CED 행정 보좌관, 과밀 지역위원회 회장 또는 대표, 과밀 지역 학군장, SLT 구성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과밀학교 교장, CCHS 회장 또는 대표 및 D75 위원회 등에게 전달 또는 특급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4. 학군의 지역 학군장은 그러한 제안 통지서 및 모든 관련 개정안을 모든 과밀 부모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할당된 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문에는 교육적 영향 선언문 사본 또는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공동 공청회의 날짜 및 장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섹션 II.B 참조). 고등학교에 관한 제안의 경우, 과밀 학부모에 대한 통지문은 할당된 학군의 지역 학군장 및 제안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학군장이 공동으로 제공합니다. 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에 관한 제안의 경우 할당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지문은 D75 학군장이 제공합니다.

B. 공동 공청회

1. 폐교나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에 대해 교육감은² 제안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과밀 CEC와 SLT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CCELL 및 CCSE를 공동 청문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고등학교에 관한 제안의 경우 CCHS도 공동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에 관한 제안의 경우 D75 위원회를 공동 공청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2. 공동 공청회 일정

- a. 그러한 공동 공청회는 교육적 영향 선언문을 접수한지 30일부터 45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b. EIS를 접수하기 전에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 또는 담당실은 과밀 CEC 회장 또는 대표자와 SLT 구성원 자격을 가진 과밀학교의 교장, CCELL 및 CCSE의 회장 또는 대표, 고등학교 또는 D75 학교 조직에 등록된 할당된 학생의 경우 CCHS 및 D75 위원회의 대표에게 잠정적인 공동 공청회 날짜 및 시간을 제안합니다. 이들 각각의 그룹은 이러한 날짜의 선택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대안적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EIS에 접수하기 전에 공청회 날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감의 피지명인이 해당 법률 요건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3. 공동 공청회 의제

- a. 공동 청문회 이전에 교육감이 지명한 담당자 또는 담당실은 공동 청문회의 제안된 공동 의제를 과밀 CEC의 회장 또는 대표자와 SLT 구성원 자격을 가진 과밀학교의 교장, CCELL 및 CCSE 회장 또는 대표자, CCHS와 D75의 회장 또는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CEC, SLT, CCELL, CCSE와 CCHS 및/또는 D75 위원회에게는 제안된 공동 의제에 참여하고 그러한 의제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b. 그러한 의제에는 교육감,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또는 폐교 제안의 경우 부교육감의 제안에 대한 간략한 발표가 포함됩니다. 그러한 의제에는 과밀 CEC, 과밀학교의 SLT, CCELL, CCSE, CCHS 및/또는 D75 위원회의 간략한 발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밀 CEC, 과밀학교의 SLT, CCELL, CCSE, CCHS 및/또는 D75 위원회는 교육감, 교육감의 피지명인 및/또는 폐교의 경우, 부교육감의 간략한 제안 발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할당 시간과 아래 명시된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² 폐교 안의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과 과밀 CEC 및 SLT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안의 경우 교육감 또는 그 피지명인, 과밀 CEC 및 SLT가 공청회를 엽니다.

교육감, 교육감 피지명인 또는 부교육감, CEC, SLT 또는 CCELL, CCSE, CCHS 또는 D75 위원회의 발표는 시간이 적절하게 제한되며 의견을 제시할 일반인의 기회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4. 교육감은 DOE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동 공청회 개최 통지문을 게시하고 모든 할당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와 할당된 학군을 대표하며 선출된 주 및 지역 관계자에게도 이를 통지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집니다.
5.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은 후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으로 폐교 또는 운영 변경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된 제안은 최초의 교육적 영향 선언문에 정의된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감이 제안서를 현저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본 규정서의 섹션 II.A.1에 명시된 양식에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된 EIS는 DOE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사본은 제 II.A.3절에 명시된 대로 과밀 CEC, 과밀 지역 위원회, 지역 학군장, 과밀학교 SLT, CCHS 및/또는 CCSE와 D75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또는 학교 운영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은 개정된 EIS를 접수한지 15일 이후에 뉴욕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2590-h(2-a)(d-1)에 따라 공동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C. PEP 승인

1. 교육감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모든 제안서를 PEP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뉴욕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2590-g(8)(a)에 따라 PEP가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 안을 승인하기 전에 일반인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집니다. 제안에 대해 PEP가 투표를 실시하기 45일 전까지 PEP는 DOE의 공식 웹사이트에 제안서 통지문을 게시하고 이 통지문을 모든 지역 교육감, CEC, 지역위원회, SLT가 회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제안서의 제목, 목적, 취지에 대한 설명
 - b. 교육적 영향 선언문의 전체 본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 c. 그러한 제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학군 대표의 이름,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d. 제안에 대한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
 - e. PEP가 제안에 대해 투표할 PEP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 f. 제안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3. 폐교 또는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교육감의 제안이 PEP가 제안한 공청회 이후 수정된 경우 PEP는 투표를 하기 15일 이상 전에 수정된 공문을 발행합니다. 수정된 공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수정된 제안서의 제목, 목적, 취지에 대한 설명
 - b. 제안서의 모든 실질적인 개정 부분에 대한 확인

- c. 최초 공표 후 제안서에 대해 수령한 일반인의 모든 의견에 대한 요약
 - d.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의 전체 본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 e. 그러한 제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고려 중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학교 대표의 이름,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f. 수정된 제안에 대한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
 - g. PEP가 수정된 제안에 대해 투표할 PEP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 h. 수정된 제안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4.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고 PEP가 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PEP는 DOE의 공식 인터넷 웹 사이트에 PEP 미팅 24시간 전에 수령한 제안에 대한 일반인 의견의 평가 내용을 게시하며 여기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언급된 문제점에 대한 요약 및 분석, 제안된 대안
 - b. 대안이 제안에 통합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
 - c. 수령된 일반인 의견에 따라 제안서에 취해진 변경에 대한 설명
 - d. 교육적 영향 선언문 또는 개정된 교육적 영향 선언문의 전체 본문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
 5. 뉴욕시 교육법 제2590-h절 하위절 (2-a) (e)항에 따라 PEP가 승인한 제안은 이 규정의 모든 해당 조항을 만족시키고 PEP 보조금이 승인된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개시하지 않습니다.

III. 복수 학교의 학교 운영 및 학교 건물 관리 절차의 현저한 변경

A. 건물위원회

1. 건물위원회는 2개 이상의 학교가 공동 배치되거나 D75 학교 조직과 공동 배치된 각각의 공립학교 건물에 마련됩니다. 건물위원회는 각각의 비차터 공동 배치 학교 또는 D75 학교 조직(또는 D75 학교 조직의 교감)의 교장과 각 공동 배치 차터스쿨이 지명한 대표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 건물의 모든 학교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일상적 운영 및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건물위원회가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 <http://schools.nyc.gov/community/campusgov>에 있는 캠퍼스 정책 비망록(Campus Policy Memo)과 절차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가 적용됩니다.
2. 건물위원회는 <http://schools.nyc.gov/community/campusgov>에 있는 Campus Policy Memo 및 절차에 명시된 방법으로 학교 건물 관리와 관련된 기타 기록과 회의록 및 의제를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B. 하나 이상의 비차터스쿨 또는 특정 D75 학교 조직으로 구성된 차터스쿨 공동 배치

1. 공동 공간 위원회

- a. 공동 공간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차터스쿨이 하나 이상의 비차터 공립학교 또는 D75 학교 조직과 공동 배치된 각 공립학교 건물에 마련됩니다. 공동 공간 위원회는 교장(또는 D75 학교 조직의 교감), 교사, 각 공동 배치 학교나 D75 학교 조직의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비차터스쿨의 교사와 학부모 구성원과 관련하여 그러한 공동 공간 위원회 구성원은 해당 학교의 SLT 구성원이 선정합니다.
- b. 그러한 위원회는 1년에 4회 이상 회의를 가집니다.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이 발효된 후(2010년 5월 28일) 공립학교 건물에 배치 또는 공동 배치를 PEP가 승인한 차터스쿨과 관련하여 공동 공간 위원회는 교육감이 마련하고 PEP가 승인한 건물 활용 계획의 구현을 검토합니다. 개정된 차터스쿨법(Amended Charter School Act)의 발효일 이전에 공립학교 건물에 배치 또는 공동 배치되는 것을 승인 받은 차터스쿨과 관련하여 공동 공간 위원회는 해당 빌딩의 현재 건물 공간 계획의 구현을 평가합니다.

2. 자본 증액 및 시설 업그레이드

- a.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자금 출처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공동 배치하기 위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안을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교육법(Education Law) 제2853절 하위절 3, d항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스쿨에 실시해야 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까지 자금을 확충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그러한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일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담당할 모든 작업과 구매한 소모품은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의 계산시 고려됩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스쿨을 위한 차터스쿨의 지출액 만큼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가 실시됩니다. 자금 출처에 관계 없이 공립학교 건물 내에 이미 공동 배치된 차터스쿨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로서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자본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한 지 3개월 이내에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스쿨을 위한 차터스쿨의 지출액 만큼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가 실시됩니다.
- b. 승인 절차
 - 1) 모든 제안된 자본 증액 및 시설 업그레이드는 운영부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건물의 건물 위원회 및 공유 공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프로젝트 시행 제안 날짜로부터 수업일 기준으로 적어도 15일 이전에 운영부나 기타 지정된 담당실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차터스쿨의 자금은 제출하는 당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2) 운영부 또는 피지명인은 차터스쿨의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 승인 신청을 검토하고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승인에 대해 권장합니다.

- 3)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차터스쿨의 운영자와 공동 배치 비차터스쿨에게 제안된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의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알립니다.
- 4) 차터스쿨의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의 원안에 대한 변경은 업무 범위를 변경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승인해야 합니다.
- 5)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승인하지 않은 자본 증액 또는 시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차터스쿨은 차터스쿨의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3개월 전에 공립학교 건물 내의 각 비차터 공립학교를 위해 차터스쿨이 지출한 금액과 동일하게 자금 증액 또는 업그레이드를 책임집니다.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사용 가능한 다른 개선책을 실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이의 제기

- 1) 공립학교 건물에 차터스쿨을 배치 또는 공동 배치하기 위한 제안과 건물 활용 계획을 PEP가 승인한 경우 건물 활용 계획의 제안 및/또는 구현과 준수에 대한 사항은 뉴욕 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의 §2853(3)(a-5)에 따라 교육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V. 비상 휴교와 학교 운영의 현저한 변화를 위한 절차

- A. 교육감은 비상 시 학생의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를 보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교하거나 학교 운영에 대한 현저한 변경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B. 교육감은 비상 조치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성명서를 제공하고 그러한 성명서를 DOE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C. 비상 휴교 또는 운영의 변경은 최장 6개월 동안만 유효하며 이 동안 교육감은 본 규정서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 휴교 또는 운영의 현저한 변경을 6개월 이상 연장하기 전에 본 규정서의 모든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V. 효력 개시일

이 규정서는 PEP가 다음을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VI. 문의사항

본 규정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i>Division of Portfolio Planning</i> N.Y.C. 교육청 52 Chambers Street – Room 405 New York, NY 10007	팩스:
212-374-5049	Portfolio@schools.nyc.gov	212-374-5581